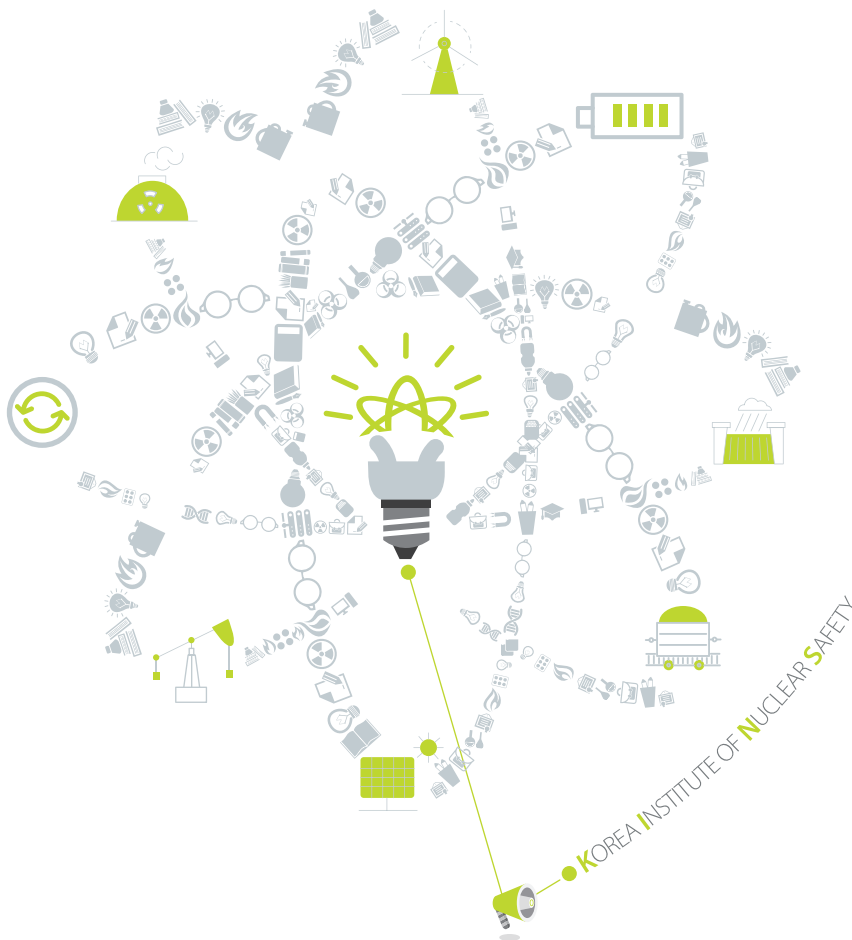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변경신고 서류 작성 매뉴얼...

2019. 1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INS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방사선애로기술지원 컨택센터



- 이 안내서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기관이 취득한 방사선발생장치 사용확인증에 기술된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대상 별로 하여야하는 신고와 준비 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 서류 작성 방법, 서류의 제출 시기 등을 설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 이 안내는 3파트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변경 신고대상 및 그에 따른 업무, 주의해야 할 사항 및 업무처리시 유의사항, 필요한 서류의 종류, 관련 서류를 수집하는 방법을 기술하고 있으며,
두 번째 파트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변경신고서를 작성하는 예시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며,
마지막 파트는 두 번째 파트에서 작성하여야 하는 내용을 항목별로 상세하게 설명하여 기술한 것입니다.
- 이 안내서를 통하여 방사선발생장치 사용확인증에 기술된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관련 인허가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 이 안내서의 2019년 12월 현재 유효한 원자력안전법 관계규정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내용으로서 법령개정 또는 관련 기준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이 절차도 변경되게 되어 이 안내서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이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나,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 있으신 사용자께서는 『방사선애로기술지원 컨택센터』 (080-004-3355)에 의견을 주시면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1월 30일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변경신고 서류 작성 매뉴얼

목 차

1. 방사선발생장치 사용변경 신고 대상 업무	1
2. 방사선발생장치 사용변경 신고 주의사항	2
3. 방사선발생장치 사용변경 신고 유형별 제출서류	3
4. 방사선발생장치 변경신고 관련 서류 수집 방법	5
5. 방사선발생장치 사용변경 신고서류 작성 예시	6
6. 방사선발생장치 사용변경 신고 서류 작성 방법 상세 내용	17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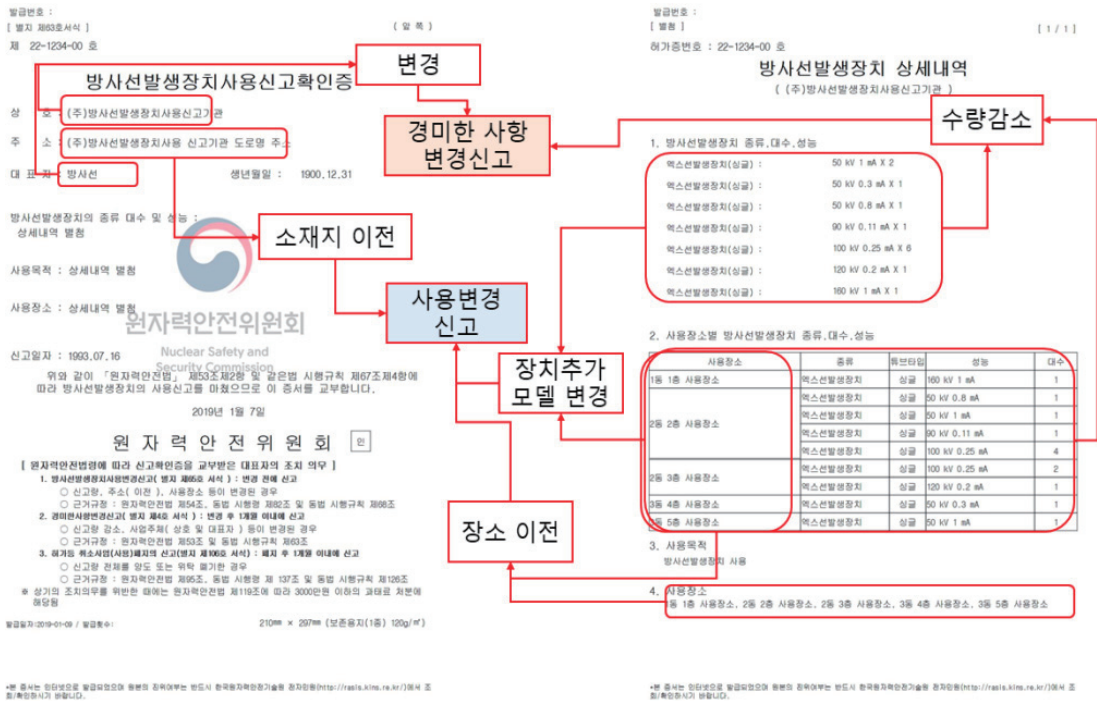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변경신고 대상 업무

신고한 내용 중 다음 표의 '변경사항 상세내용'에 설명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고사항'에 명시한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사용변경신고는 변경을 하기 전에 해야 한다.

항 목	변경사항 상세내용	신고 사항
상호 변경	○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에 등재된 상호명 변경 -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변경, 자체적으로 사업소명 변경 등	○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 법인 합병, 분할, 사업의 양도 등으로 인한 상호 변경	○ 지위 승계 신고
대표자 변경	○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 등재된 대표자 변경 - 대표자 교체(○○○ 대표 → □□□ 대표) - 대표자 추가, 제외 (1인→2인, 3인→1인 등)	○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 법인 합병, 분할, 사업의 양도 등으로 인한 대표자 변경	○ 지위 승계 신고
사업소 소재지 변경	○ 소재지 이전 - 방사선발생장치 신고확인증에 등재된 소재지에서 다른 소재지로 이전하여 주소가 변경됨	○ 사용 변경 신고
	○ 법인 합병, 분할 등으로 인한 변경 - 상호, 대표자가 변경되면서 사업소 소재지도 이전	○ 지위 승계 신고 + ○ 사용 변경 신고
	○ 사업소 소재지 주소 변경 -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사업소 소재지 이전 없이 주소만 변경	○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방사선발생장치 추가	○ 방사선발생장치 추가 -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확인증에 등재되어 있는 사용장소에 방사선발생장치를 추가 -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확인증에 등재되어 있는 사용장소와 다른 사용장소에 방사선발생장치를 추가	○ 사용 변경 신고
방사선발생장치 교체	○ 사용중인 방사선발생장치를 다른 장치로 변경 -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확인증에 등재되어 있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성능이 다른 방사선발생장치로 변경	○ 사용 변경 신고 + ○ 양도양수신고(양도하는 경우)
	-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확인증에 등재되어 있는 방사선발생장치를 동일한 성능의 다른 모델의 방사선발생장치로 변경	○ 사용 변경 신고 + ○ 양도양수신고(양도하는 경우)
	-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확인증에 등재되어 있는 방사선발생장치를 동일한 성능, 동일한 모델의 방사선발생장치로 변경	○ 신고 불필요 + ○ 양도양수신고(양도하는 경우)
방사선발생장치 감량	○ 사용중인 방사선발생장치를 감량 - 방사선발생장치가 고장 또는 노후화되어 방사선발생장치를 자체폐기 -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다른 허가/신고기관에 양도하거나 판매사에 반납 - 방사선발생장치를 해외 업체에 수출 또는 반출	○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 ○ 양도양수신고(양도하는 경우)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장소 이전	○ 기관내에서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위치를 이전 -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의 소재지 변경은 없으면서, 사용장소가 변경됨	○ 사용 변경 신고
신고된 내용 및 성능의 오기 정정	○ 담당자의 실수 등으로 신고확인증에 기재된 내용이 신고한 내용과 차이가 있을 때 ○ 신고가 완료된 이후 설계승인서의 내용이 변경되어 성능을 정정할 필요가 있을 때	○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변경 신고대상 확인

방사선발생장치 신고확인증의 내용을 기준으로 변경신고 대상을 확인할 수 있다.



2

방사선발생장치 사용변경 신고 주의 사항

유의사항

방사선발생장치 사용변경 신고시에 주의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일 러 두 기	① 방사선발생장치 사용변경 신고는 처음에 신고된 내용이 변경이 된 사항 있을 때 이행하는 것이 방사선발생장치 사용변경 신고이다. ② 방사선발생장치 사용변경 신고는 “방사선발생장치사용(이동사용)변경신고사항요약” 및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확인증으로 변경신고 내용확인 바로보기”에서 변경신고 대상이 있을 때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방사선발생장치 사용변경신고 사항과 그 외에 사항(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대상)의 변경이 같이 발생할 때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고 방사선발생장치 사용변경신고에 통합하여 신고하면 업무 절차가 간소화되고 처리기간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④ 나머지 안내에 대한 정보는 신규 사용신고와 동일하다.
주 의 사항	① 방사선발생장치 사용변경신고는 방사선발생장치신규신고와 마찬가지로 변경이 발생하기 전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변경을 하기전에 일정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나머지 주의사항은 방사선발생장치 신규 사용신고시와 동일하다.

3

방사선발생장치 사용변경 신고 유형별 제출 서류

대상확인

방사선발생장치 사용변경 신고 및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업무별 준비서류 요약

- ◎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변경신고 및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대상 업무와 준비하여야 할 서류 목록은 다음 표와 같다.
- ◎ 사업소 이전, 방사선발생장치 추가, 사용장소 이전이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변경신고 대상이다.
- ◎ 방사선발생장치 사용변경신고 대상이 변경되고 경미한사항 변경신고 대상이 같이 변경된 경우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변경신고로 통합하여 신고를 할 수 있다.

변경 되는 내용 제출(준비)할 서류		방사선발생장치 사용변경신고 대상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대상			
		사업소 이전	방사선발생장치 추가	RG 사용장소 (설치위치) 이전	방사선발생장치 감량	상호 변경	대표자 변경	신고 내용(오기) 정정
필수서류	방사선발생장치사용변경신고서	◎	◎	◎	◎	◎	◎	◎
	변경전후 대비표	◎	◎	◎	◎	◎	◎	◎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확인증(최신본) 원본	◎	◎	◎	◎	◎	◎	◎
선택서류	대표자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대표자 인적사항						◎	
	RG 추가		◎					
			◎					
	RG 감량							
					○			
					○			
					○			
	소재지 이전	◎						
	설치장소이전		◎	◎				
	사업자등록증	◎				◎	◎	◎
	임대차 계약서 등	○						

주의 1) 위 표에서 “◎” 표시는 필수 제출 서류이고 “○”표시는 해당 사항 발생시 제출 서류이다.

주의 2) “필수서류”는 필수적으로 제출서류이고, “선택서류”는 변경 대상 발생시 제출 서류이다.

예로서) 사업소 이전 예정이고, 방사선발생장치 감량 및 대표자 변경이 되었다면, 제출서류는 ① 방사선발생장치사용변경신고서, ② 변경전후 대비표, ③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확인증 원본, ④ 대표자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대표자 인적사항, ⑤ 사용시설등 및 주변환경에 관한 설명서(주변지도, 평면도 포함), ⑥ 사업자등록증(필요시 임대차 계약서 등)가 된다.

서류목록

변경된 내용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 내용요약

필요 제출 서류	작성 및 제출이 필요한 시기
방사선발생장치사용(이동사용) 변경신고서	◦ 모든 경우에 항상 제출 ※ 방사선발생장치 감량, 상호변경, 대표자변경, 신고 내용(오기) 정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변경신고로 일괄처리
변경전후 대비표	◦ 모든 경우에 항상 제출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확인증(최신본) 원본	◦ 모든 경우에 항상 제출 ※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확인증을 분실한 경우, 허가증재발급신청서, 재발급사유서,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사본 제출
대표자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대표자 인적사항	◦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변경된 대표자에 대하여 작성 및 제출 ※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음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표자를 대통령,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음
방사선발생장치 명세서	◦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방사선발생장치 이외에 다른 모델의 방사선발생장치가 추가되는 경우에만 작성하여 제출
방사선기기설계승인서	◦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방사선발생장치 이외에 다른 모델의 방사선발생장치가 추가되는 경우에만 사본 제출
방사선발생장치 자체폐기사진	◦ 방사선발생장치를 자체폐기한 경우에만 제출
수출승인서(반출승인서)	◦ 방사선발생장치를 해외로 수출(또는 반출)한 경우에만 사본제출 ※ 수출승인서(또는 반출승인서)는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서 발급
양도양수신고서	◦ 방사선발생장치를 다른 신고기관, 허가기관 또는 판매기관, 생산기관에 양도한 양도양수신고서 사본제출
사용시설등 및 주변환경에 관한 설명서(주변지도/평면도 포함)	◦ 사업소 소재지가 이전된 경우에만 제출
이전된 사용장소에서 RG 설치 평면도	◦ 방사선발생장치 추가, 사용장소 이전인 경우에만 제출
사업자등록증	◦ 사업소 이전, 상호변경, 대표자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임대차 계약서 등	◦ 추가제출 ◦ 사업소 이전시 사업자등록증에 이전된 사업소 소재지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제출

4

방사선발생장치 변경신고 관련 서류 수집 방법

1.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1호 서식에 따른 방사선발생장치사용(이동사용)신고서

방법 1

방사선안전관리통합정보망(<https://rasis.kins.re.kr>)에서 ①민원→②민원지원→③민원서식 순으로 검색하여 입수



방법 2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 검색하여 다운로드

2. 방사선발생장치 명세서(대표자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대표자 인적사항 포함)

방법

방사선안전관리통합정보망(<https://rasis.kins.re.kr>)에서 ①민원→②민원절차→③민원서식 중 “방사선발생장치사용(이동사용)신고서” 파일에 첨부되어 있는 파일에서 입수

3. 방사선기기설계승인서

방법

구하고자하는 방사선발생장치 판매기관에 요구하여 사본 입수

4. 사용시설등 주변환경에 관한 설명서

방법

방사선안전관리통합정보망(<https://rasis.kins.re.kr>)에서 ①민원→②민원절차→③민원서식 중 “방사선발생장치사용(이동사용)신고서” 파일에 첨부되어 있는 파일에서 입수

5.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에 소재지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기부등본, 건축허가서, 임대차 계약서, 입주계약서 등 사업소의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방법

신청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입수, 사업자등록증은 종된 과세대상 사업장이 모두 표기되어 있는 전체를 입수

5

방사선발생장치 사용변경 신고 서류 작성 예시

1

방사선발생장치 사용변경신고서(이동사용)신고서

필수서류 1

방사선발생장치 사용변경신고서(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서식])

- ◎ 사용변경신고서는 사업자등록증 및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 사용변경신고서는 변경전의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 다만,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변경된 대표자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서식]

방사선발생장치사용(이동사용)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상호 신고확인증에 등재된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본점소재지 주소 (우편번호 : 11111)	전화번호 본사 담당자 전화번호		
	대표자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주민등록 번호 수집이 허용된 항목으로 반드시 작성		
	사업소명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장소가 있는 상호의 지점, 공장 또는 분소명 (○○지점, ○○공장, ○○분소, ○○지사, ○○사업소, ○○연구소, ○○센터 등, 부서명칭은 아님)			
	사업장소 위 사업소명의 위치한 소재지 주소 (우편번호 : 22222)	전화번호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 전화번호		
	담당부서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 소속 부서	담당자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 성명		
신고내용	변경사항 변경된 사항을 간략하게 요약 대표자 변경 (홍길동 ⇨ 김철수) 엑스선발생장치 160 kV 3 mA × 3대 추가 (사용장소 : 품질관리실)			
	변경사유 대표자 변경, 방사선발생장치의 양수			
	방사선발생장치 구입(예정)처 방사선발생장치를 구매, 양도 등 등 구입하는 기관의 명칭 기술	전화번호 방사선발생장치를 공급하는 업체의 전화번호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이동사용) 변경을 신고합니다.

2018 년 8 월 1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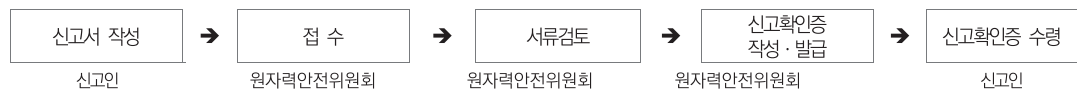
신고인 **대표자 성명 및 직인 날인**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신고확인증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 변경전후 대비표

필수서류2

변경전후 대비표

- ◎ 기존에 신고된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확인증에 등재되어 있는 내용을 변경전 항목에 작성한다.
- ◎ 변경되었거나 변경 예정인 내용은 변경후 항목에 작성하고, 변경사유란에는 변경된 이유를 작성한다.
- ◎ 작성 안내에서 신고확인증은 방사선발생장치 신고확인증을 의미한다.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이동사용)변경신고 변경전후 대비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① 신고번호	제22-0000-00호 (신고확인증 좌측 상단)	- 변경후 신고번호는 공란	
② 상호	신고확인증에 있는 현재상호 상호중 "-"앞에있는 명칭	변경된 상호 사업자등록증의 상호와 동일	
③ 소재지	신고확인증에 등재된 주소	사업소 이전의 경우 이전된 사업소의 주소	사업소 이전
④ 대표자	신고확인증에 등재된 대표자명	변경된 대표자 성명	대표자 변경
⑤ 사용목적	신고확인증에 등재된 사용목적	변경되거나 추가된 경우 사용목적 추가	추가된 사유를 기재
⑥ RG의 종류 및 수량	신고확인증에 등재된 방사선발생장치의 종류, 대수 성능 예) [엑스선발생장치] 160 kV 5 mA × 5 120 kV 3 mA × 5 45 kV 0.5 mA × 2	추가, 감량되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종류, 대수 성능 예) [엑스선발생장치] 160 kV 5 mA × 5 120 kV 3 mA × 8 45 kV 0.5 mA × 1	변경사항 없음 방사선기기 신규설치 방사선기기 폐기
⑦ 사용장소별 RG의 종류 및 수량	신고확인증에 등재된 사용장소별 방사선발생장치의 종류, 대수 성능 예시) 1층 품질관리실 160 kV 5 mA × 3 120 kV 3 mA × 3 2층 분석실 160 kV 5 mA × 2 120 kV 3 mA × 2 사업소 내(보관장소 : 3층 사무실내 금고) 45 kV 0.5 mA × 2	추가, 감량, 이전되는 사용장소별 방사선발생장치의 종류, 대수 성능 예시) 1층 품질관리실 160 kV 5 mA × 5 120 kV 3 mA × 3 2층 분석실 160 kV 5 mA × 0 120 kV 3 mA × 2 사업소 내(보관장소 : 3층 사무실내 금고) 45 kV 0.5 mA × 1 3층 연구실 120 kV 3 mA × 3	2층 분석실 160 kV 5 mA × 2대 이전설치 1층 품질관리실로 이전 타 기관 양도 신규설치
⑧ 기타변경 사항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1	법인사업자로 변경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 원본(최신본)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 원본(최신본)

- 1)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
- 2) 재발급 사유서
- 3)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illegible]

8_ 방사선안전관리통합정보망 <https://rasis.kins.re.kr>

4 대표자 인적사항

선택서류1

대표자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대표자 인적사항 (원자력안전법 제14조 관련)

- ◎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하는 선택서류이다.
※ 기존 대표자에 대한 정보는 작성할 필요가 없다.

대표자 인적사항 (원자력안전법 제14조 관련)	
내국인 대표자	- 성명 : 홍대표 - 주민등록번호 : 190301-1010101 - 등록기준지(본적지) 주소 :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119번지
내국인 대표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본적지) 주소 :
외국인 대표자	- 성명 : 미국대표 - 외국인등록번호 : 190301-5050505 - 국내거소지 주소 :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119번지
외국인대표자	- 성명 : - 여권번호 : - 국내거소지 주소 :
외국국적 한국인	- 성명 : 미국한국대표 - 외국인등록번호 : 190301-5050505 - 국내거소지 주소 :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119번지

- 외국인 대표자 : 3가지 서류중 1가지 서류 추가 제출
 - ① 국내 거주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 ② 외국 국적 한국인 :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 ③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외국인 : 여권사본 + 자국내에서 범죄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 (1) 아포스티유 또는
 - (2) 해당국가 정부에서 발행한 자국내에서 범죄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외국인 대표자인 경우 제출 서류〉

구분	국내거주 외국인	외국국적 한국인	국내 비거주 외국인
제출서류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여권사본 + - 자국내에서 범죄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 국무총리,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표자를 임명) 대표자 : 인적사항 제출 불필요
- 대표자에 대한 결격사유에 대한 검증이 완료된 대표자로서 대표자 인적사항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5 방사선발생장치 명세서

선택서류2

RG 추가에 따른 방사선발생장치 명세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제1호 관련)

◎ 방사선발생장치가 추가되는 경우에만 제출하는 선택서류이다.

※ 사용장소 이전, 사업소 이전 등 방사선발생장치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는다.

방사선발생장치 명세서	
① 방사선발생장치의 종류	- 방사선기기설계승인서에 표기되어 있는 방사선기기의 종류와 튜브 타입을 기술 예) 캐비닛형 엑스선발생장치, 싱글
② 방사선발생장치의 성능/수량	- 방사선기기설계승인서에 표기된 방사선기기의 성능을 기술 - 병행하여 도입하고자하는 방사선발생장치의 대수를 기술 예) 160 kV, 0.5 mA × 2
③ 방사선발생장치 모델번호	- 방사선기기설계승인서에 표기되어 있는 방사선기기의 모델을 기술 예) X-RAY 3000D
④ 고유번호	- 고유번호가 확인된 경우에만 기술 - 고유번호를 모를 경우에는 "미정"으로 기술
⑤ 설계승인번호	방사선발생장치 설계승인서에 표기된 승인번호를 기술
⑥ 제조회사의 명칭 (제조국)	- 방사선발생장치를 제작하는 업체의 명칭으로서 방사선발생장치 설계승인서에 표기된 제작사를 기술 - 방사선발생장치의 제조국을 병행하여 기술 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
⑦ 공급사 (전화번호)	- 방사선발생장치를 구입하는 경우, 판매기관 명칭을 기술 - 방사선발생장치를 양도받는 경우, 양도기관 명칭을 기술 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판매기관) 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양도기관)
⑧ 사용목적	- 신청기관에서 사용하고자하는 실제 목적을 기술 예) 회로기판 불량검출 및 결함검사, 제품내 이물질 검사, 용접결함검사 등
⑨ 사용방법	- 방사선발생장치를 시작, 운전, 종료 방법을 간단히 기술 - 가동시 통상적인 운전조건(전압, 전류)을 기술
⑩ 사용장소	- 방사선발생장치가 설치되는 건물명칭 층수, 설치공간 기술 예) 생산동 1층 정밀측정실
⑪ 표면방사선량률	- 사용하고자하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카탈로그 또는 설계승인 시 평가한 선량 등 통상적인 표면방사선량률을 기술 ※특별히, 사용시간이 긴 작업 등 작업자의 피폭선량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연간 선량을 계산하여 기술
⑫ 기타 사항 사용 시 주의사항 등	-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사항을 기술 - 방사선발생장치를 취급할 때 주의사항 - 비밀번호로 동작하는 장비는 그 특성을 기술 - 설계승인을 받은 기관과 판매사가 서로 다를 경우, 그 이유와 경위를 기술

[주의사항]

- 방사선발생장치 명세서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제1호에서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반드시 제출되어야 한다. 만일 위 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 서류 보완이 수반되어 처리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 위 명세서는 시행규칙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항목을 기술한 것으로서 신고서 서식처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아니고 사용자가 편의에 따라 수정이 가능하다.
- 도입하는 방사선발생장치의 대수가 여러 대인 경우, 방사선발생장치의 종류, 성능, 모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종류, 성능, 모델별로 작성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위 서식으로 구별하여 표현이 가능하다면, 하나의 서식에 내용을 모두 기술하여도 된다.

6

방사선기기설계승인서

선택서류3

RG 추가에 따른 방사선기기설계승인서

- ◎ 방사선발생장치가 추가되는 경우에만 제출하는 선택서류이다.
 - ※ 사용장소 이전, 사업소 이전 등 방사선발생장치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는다.
 - ※ 튜브타입이 정정된 경우 예전 설계승인서와 현재 설계승인서를 제출한다.
- ◎ 방사선발생장치가 추가되는 경우에만 추가되는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설계승인서를 스캔하여 첨부 한다.
- ◎ 도입하는 방사선발생장치의 대수가 여러 대인 경우,
 - ① 방사선발생장치 명세서에 제시한 방사선발생장치 모델 및 설계승인번호별로 첨부 한다.
- ◎ 설계승인 도입 이전의 장비는 설계승인서가 없어도 된다.
 - ※ 설계승인서가 없을 경우, 카탈로그를 제출한다.(설계승인 제출시, 카탈로그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발급번호 190217841581 [별지 제7호서식]		(일 록)	
제 344-24 호			
상 호 :		발사선기기설계승인서	
주 소 :			
대 표 자 : 김형철		승인일자: 1965.02.20	
방사선기기의 종류 :			
종 류 : 제비넛형 엑스선발생장치			
모 델 : 상세내역 별첨			
성 능 : 상세내역 별첨			
제작사 :			
구 분 : 신고대상장비			
승인번호 :		원자력안전위원회	
사용목적 : 제60조안전검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승인조건 : 상세내역 별첨			
승인일자 : 2004.10.06			
기기검사 결과 : 합격			
위와 같이 원자력안전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서를 발급합니다.			
2019년 2월 8일			
(표고부: K)			
원 자 력 안 전 위 원 회			

별첨]
[1 / 2]

문서번호 : 344-24 호
설계승인번호 :

설계승인서 상세내역

(주)바비스)

모델 및 성능

성능	류번호입	비고
80 KV, 1.25 mA	싱글	
80 KV, 1.25 mA	싱글	
120 KV, 4 mA	싱글	
80 KV, 1.25 mA	싱글	
80 KV, 1.25 mA	싱글	
80 KV, 1.25 mA	싱글	
80 KV, 1.25 mA	싱글	
80 KV, 1.25 mA	싱글	
80 KV, 1.25 mA	싱글	
80 KV, 1.25 mA	싱글	
30 KV, 1.25 mA	싱글	
30 KV, 1.25 mA	싱글	
30 KV, 1.25 mA	싱글	
30 KV, 1.25 mA	싱글	
30 KV, 1.25 mA	싱글	
30 KV, 1.25 mA	싱글	
30 KV, 1.25 mA	싱글	
30 KV, 1.25 mA	싱글	
30 KV, 1.25 mA	싱글	
30 KV, 1.25 mA	싱글	
120 KV, 7.5 mA	싱글	
120 KV, 7.5 mA	싱글	
120 KV, 7.5 mA	싱글	

방사선발생장치 감량에 필요한 서류

RG 감량에 따른 방사선발생장치 양도양수신고서, 자체폐기사진 또는 수출승인서(또는반출승인서)

- | | |
|---|---|
|  |  |
| <p>발생장치 철거(정면)</p> | <p>발생장치 철거(하단)</p> |
|  |  |
| <p>에스서각 분리</p> | <p>에스서각 파손</p> |

〈자체폐기 사진〉

[illegible]

〈양도양수 신고서 사본〉

수출승인서

수출대상국가	북한정보안전본부	수출업체	보성정보
주 소 :		영문주소 :	HAJONGHAE
주 소 :		주 소 :	Asiatic VET NAM Company Limited
주 소 :		주 소 :	PO BOX 4048 Ha Noi, Ho Chi Minh City District 10
주 소 :		주 소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주 소 :		주 소 :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839, 840, 841, 842, 843, 844, 845, 846, 847, 848, 849, 850, 851, 852,

〈수출승인서 사본〉

8 사용시설등 및 주변환경에 관한 설명서

선택서류5

사용시설등 및 주변환경에 관한 설명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제3호 관련)

- ◎ 사업소 소재지가 이전된 경우에만 제출한다.
※ 사용장소 이전, 방사선발생장치 추가 등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는다.

사용시설 및 주변환경 현황에 관한 설명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제3호 관련)

1. 사업소(사용시설) 주변 환경

가. 지리 환경

- 1) 사용시설 주변 부지의 특성(농경지, 공단, 주거지 등 조성 여부)
- 여기부터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 2) 사용시설 인근에 설치된 대중 이용시설(학교, 시장 등) 주유소 등 위험물 취급시설 등의 위치정보 등
- 여기부터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 3) 사용시설 인근에 조성된 수계(강, 하천 등)에 대한 설명
- 여기부터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회 환경

- 1) 사업소 주변의 개략적인 인구밀도 및 주민 분포, 유동 인구 유동 특성
- 여기부터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 2) 사업소 주변의 교통망 및 소방 도로 등
- 여기부터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 3) 관할 소방서의 위치 및 사용시설로부터의 거리, 연락처 등
- 여기부터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 4) 관할 경찰서의 위치 및 사용시설로부터의 거리, 연락처 등
- 여기부터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다. 사용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지도 (별첨 1)

[별첨 1] 사용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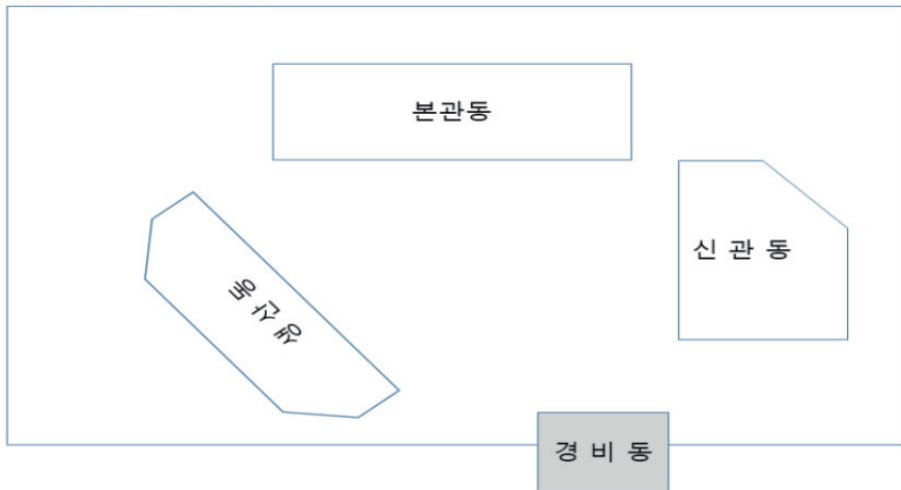
2. 사용(보관)장소 주변 특성

가. 사용(보관)장소 및 작업환경의 특성

- 1) 사용장소 : 방사선발생장치 명세서에 표기된 사용장소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
- 2) 사용장소 주변에서 피폭될 수 있는 주변에 사람의 접근 가능성 및 피폭될수 있는 인원수
- 여기부터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용(보관)장소의 특성

- 1) 화재 우려 : 건물의 주요 구조부의 재질(콘크리트, 불연성 자재 등) 및 소방시설 설치 등
- 여기부터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 2) 침수 우려 : 사용시설의 설치높이, 배수로 등
- 여기부터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 3) 지반붕괴의 우려 : 건물의 주요 구조부의 재질, 등
- 여기부터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 4) 보안관리 : 사용(보관)시설에 CCTV, 시건장치, 출입통제시스템 등의 보안설비 설치
- 여기부터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다. 사용(보관)장소의 평면도 (별첨 2, 별첨 3)**[별첨 2] 사업소 내 건물 배치도****000공장 건물 배치도****[별첨 3] 사용장소 평면도 (사용장소 명칭, 방사선원의 모델명, 성능, 수량을 함께 기재합니다.)****[본관동 2층 평면도]****3. 기타 특기사항**

(필요한 경우) 방사선안전측면에서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9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장소에 대한 설명서

선택서류6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장소에 대한 설명서(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제3호 관련)

- ◎ 방사선발생장치 설치장소(사용장소) 변경(이전, 또는 추가)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 기존 사용장소에 사용방사선발생장치 추가되는 경우에는 별첨의 설치 도면만 제출한다.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장소에 대한 설명서

1. 사용(보관)장소 주변 특성

가. 사용(보관)장소 및 작업환경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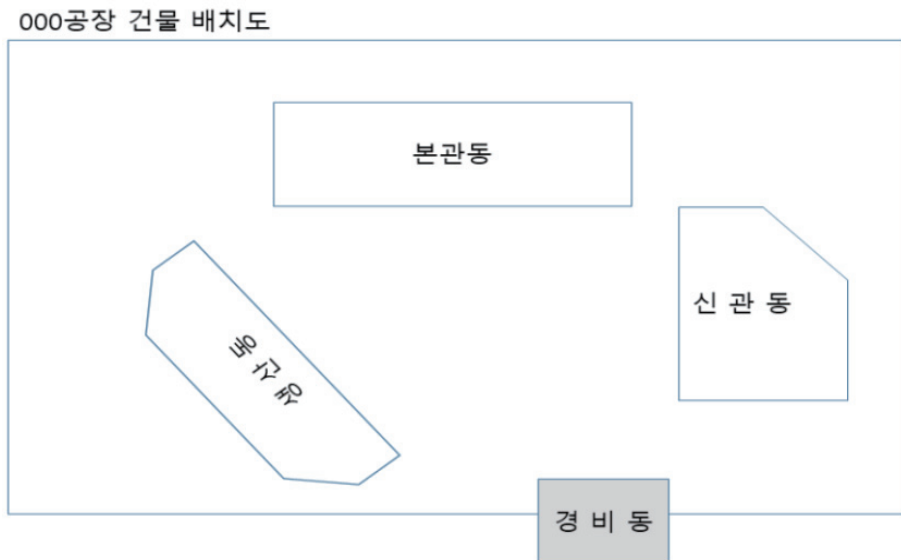
- 1) 사용장소 : 방사선발생장치 명세서에 표기된 사용장소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
- 2) 사용장소 주변에서 피폭이될 수 있는 주변에 사람의 접근 가능성 및 피폭될수 있는 인원수
 - 여기부터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용(보관)장소의 특성

- 1) 화재 우려 : 건물의 주요 구조부의 재질(콘크리트, 불연성 자재 등) 및 소방시설 설치 등
 - 여기부터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 2) 침수 우려 : 사용시설의 설치높이, 배수로 등
 - 여기부터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 3) 지반붕괴의 우려 : 건물의 주요 구조부의 재질, 등
 - 여기부터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 4) 보안관리 : 사용(보관)시설에 CCTV, 시건장치, 출입통제시스템 등의 보안설비 설치
 - 여기부터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다. 사용(보관)장소의 평면도 (별첨 1, 별첨 2)

[별첨 1] 사업소 내 건물 배치도



본관동 2층 측정실
X-RAY 3000D(80 kV 3 mA x 1)

합배설

측정실

분석실

성능평가실

공조실

박정광계

가스실

배출구

2.200

3.000

1.950

2.950

2.200

2.200

1.050

1.350

3.300

1.500

903

1.700

[본관동 2층 평면도]

(필요한 경우) 방사선안전 측면에서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 16_ 방사선안전관리통합정보망 <https://rasis.kins.re.kr>

방사선애로기술지원 컨택센터 080-004-3355 _ 17

상세방법

신고서 항목별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번호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부여한 것이다

① 상호

- 상호의 변경이 없다면,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되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법인명(단체명)을 기술한다.
이 때 상호의 명칭은 방사선발생장치사용신고확인증의 상호중 “-”앞에 있는 명칭과 동일한 명칭이 된다.
- 상호가 변경된 경우라면,
 -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도 상호란에는 현재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에 있는 상호를 기재하고, 변경된 내용은 변경전후 대비표 및 신고서 “변경사항”란에 변경된 내용을 기술한다.
 - * 변경된 상호는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되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법인명(단체명)이 되어야 하며, 상호는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되어 있는 법인명(단체명)과 동일한 명칭을 상호로 기술하여야 한다.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확인증에 나타나있는 상호명의 규칙〉

-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의 상호란에 표기되는 규칙은 본사명-사업소명의 조합으로 상호가 구성이 된다.
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대전에 본원이 있고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현장주재검사팀이 소재하는 경우 상호 표기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현장주재검사팀이 된다.
- 따라서, 사업소명은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의 상호란에 표기되어 있는 상호중 “-”앞에 나타나있는 명칭이 상호명이 된다.
예)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의 상호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현장주재검사팀”인 경우 상호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된다.

②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의 변경이 없는 경우 변경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신고서의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변경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변경전후 대비표의 변경 후에 변경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변경사항을 반영한다.

③ 주소

- 본사의 소재지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주소란에 변경전 주소를 기술하고, 변경된 내용은 변경전후 대비표 및 신고서 “변경사항”란에 변경된 내용을 기술한다.
- 따라서 주소는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되어 있는 본점소재지를 도로명주소로 기재한다.
※ 주의사항 : 사업자등록증에 본점 소재지와 사업소 소재지가 서로 다른 경우, 주소란에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소 소재지 주소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서류의 보완이 발생할 수 있다.

④ 전화번호

- 본사에서 방사선발생장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사람)의 전화번호 또는 대표번호를 기재한다.
- 따라서, 본사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서 최신의 연락처로 현행화하여 신고서를 작성한다.

⑤ 대표자

- 대표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에 등재되어 있는 대표자 성명을 모두 기재한다.
-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대표자 성명을 기재한다.
- 또한, 대표자 변경 내용은 변경전후 대비표 및 신고서 “변경사항”란에 변경된 내용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 대표자는 최초 사용신고와 동일하게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대표자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재를 한다.
 - case 1) 사업자등록증에 단독대표인 경우, 대표자를 대표자란에 기재해야 한다.
 - case 2) 사업자등록증에 공동대표인 경우, 공동대표 모두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표자 모두를 대표자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 case 3) 사업자등록증에 각자대표인 경우, 대표자 1인 또는 각자대표 모두를 대표자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신고인이 선택하여 대표자를 기재하시면 된다.
 - case 4)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 국무총리,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표자를 임명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대표자란에 대표자의 직함을 기재한다.

⑥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에 등재되어 있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마스킹 처리하지 않고 모두 기재한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이 공동 대표인 경우에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확인증에 등재되어 있는 대표자 모두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되어 있는 변경된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다음의 경우에 따라 기재한다.
 - case 1)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란에 기재된 공동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모두 기재한다.
 - case 2) 각자대표인 경우, 대표자란에 기재된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모두 기재한다.
 - case 3)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 case 4) 국내거주 외국인, 국내거주 재외동포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모두 기재한다.
 - case 5)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 ※ 주의사항 : 대표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정보는 제공되는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외국인 대표인 경우에는 추가 자료를 제출한다.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허용된 항목으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함.**

⑦ 사업소명

- 사업소명은 변경전의 사업소 명칭을 기재하고, 변경사항은 변경전후 대비표 및 신고서 “변경사항”란에 변경된 내용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 방사선발생장치사용신고확인증의 상호가 “본사명-사업소명”의 조합으로 구성되거나 본사와 사업소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사명”만 상호가 된다.
 - 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대전에 본원이 있고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현장주재검사팀이 소재하는 경우 상호 표기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현장주재검사팀이 된다.
 - 따라서, 사업소명은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의 상호중 “-”이후에 있는 명칭이 사업소명이 된다.
 - 예)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의 상호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현장주재검사팀”인 경우 사업소명은 “현장주재검사팀”이 된다.
- 이 때, 변경된 사업소명은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상호와 동일하거나, 과세대상 사업자과세단위 적용 종원사업장 명세에 등재되어 상호명이 사업소명이 된다.
- 다만, 임대사업장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소명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사업소명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다.
- 통상적으로 사업소명은 oo지점, oo공장, oo분소, oo지사, oo사업소, oo연구소, oo센터 등 다양한 형태로 사업소명이 가능하지만 방사선발생장치가 설치되는 사용시설의 명칭이나 조직의 단위 부서의 명칭이 사업소명이 될 수는 없다.

○ 사업소명은 아래의 경우에 따라 기재한다.

case 1) 사업자등록증에 본점소재지와 사업장소재지가 동일한 경우, 사업소명은 상호명과 동일하게 기재한다.

case 2) 사업자등록증에 본점소재지와 사업장소재지가 구분되고,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업장소재지에서 사용하지만, 상호가 본사 상호와 동일한 경우에는 상호명과 동일하게 사업소명을 기재할 수 있다.

case 3) 사업자등록증에 본점소재지와 사업장소재지가 구분되고, 사업자등록증의 과세대상 사업자과세단위 적용 종전사업장 명세에 나타나있는 상호에서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과세대상 사업자과세단위 적용 종전사업장 명세에 나타나 있는 상호를 기재한다.

case 3)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의 과세대상 사업자과세단위 적용 종전사업장 명세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신고하는 기관의 규모에 따라 사업소가 지리적(소재지 주소 등)으로 분리되어 있거나, 신고하는 기관의 관리체계상 분리하여 관리하고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고하는 기관에서 명칭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업소명을 기재할 수 있다.

⑧ 사업장소

○ 사업장소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에 등재되어 있는 “주소”와 동일하게 사업장소의 주소를 기재한다.

○ 사업소 이전되어 사업소 소재지 주소가 변경된 경우

- 기존의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에 등재되어 있는 변경전의 사업소 소재지 주소를 기술하고, 변경사항은 신고서 “변경사항”란에 변경된 내용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상세한 내용은 변경전후 대비표에 반영한다.

○ 변경된 사업소 소재지 주소(사업장소)는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본점소재지, 사업장소재지 주소가 되거나, 과세대상 사업자과세단위 적용 종전사업장 명세에 등재되어 소재지 주소가 된다.

○ 다만, 임대사업장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소명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방사선발생장치가 설치되는 시설이 위치한 장소의 임대차계약서, 입주계약서 등 추가로 제출된 자료에 등재되어 있는 소재지 주소를 기재한다.

⑨ 전화번호

○ 정부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안전성 검토중 질의사항 및 보완사항이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이고, 사용 변경신고 완료 이후에는 방사선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관련 조치사항, 방사선 안전정보, 관련 제도의 변경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전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정보이다.

○ 사용신고를 신청한 담당자의 연락처를 기록하며, 기본적으로 유선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출장 등으로 유선연락이 곤란한 경우에는 휴대폰 번호를 병행하여 기재한다.

○ 따라서, 담당자 전화번호는 항상 변경신고서 최신의 연락처로 현행화하여 신고서를 작성한다.

⑩ 담당부서

○ 정부나 KINS에서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관련 조치사항, 방사선 안전정보, 관련 제도의 변경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전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정보이다.

○ 사용신고를 신청한 담당자가 소속되어 있는 부서의 명칭을 기재한다.

○ 따라서, 담당부서는 변경신고등 인허가 신청시에 최신의 담당부서로 현행화하여 신고서를 작성한다.

⑪ 담당자

○ 정부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안전성 검토중 질의사항 및 보완사항이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이고, 사용 변경신고 완료 이후에는 방사선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관련 조치사항, 방사선 안전정보, 관련 제도의 변경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전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정보이다.

○ 따라서, 담당자 성명은 최신의 정보로 현행화해야 한다.

⑫ 방사선발생장치 구입(예정)처

- 방사선발생장치 구입(예정)처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추가하거나, 교체시에만 작성한다.
- 방사선발생장치가 원자력안전법 제53조, 원자력안전법 제94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3조,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에 적합하게 공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특히, 원자력안전법 제94조에 따라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소지 및 양도·양수 제한 규정에 위배되는 지를 검토하여 미승인 취급자가 방사선발생장치를 유통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을 요구하는 항목이다.
- 따라서, 신고인이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방사선발생장치를 도입하는 기관의 명칭을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방사선발생장치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생산허가 또는 판매허가를 받은 기관의 명칭을 기재한다.
- 방사선발생장치를 다른 허가기관 또는 신고기관에서 양도 받는 경우에는 양도받는 기관의 명칭을 기재한다.
- * 실제로 방사선발생장치를 다른 사용허가기관이나 사용신고기관에서 양수하여 사용할 예정인데 방사선발생장치의 판매허가기관이나 생산허가기관의 명칭을 기재하여 승인을 받고, 후에 당초 계획대로 사용허가기관이나 사용신고기관에서 방사선발생장치를 양수한 후 양도·양수 신고를 하였을 때 양도하는 기관이 해당 방사선발생장치가 허가 또는 신고범위에 없다고 한다면, 양도·양수 신고가 처리되지 않으며, 원자력안전법 제94조에 위배될 수 있다.
- 만일, 방사선발생장치를 구입하는 경우에 방사선발생장치의 판매허가를 받지 않고, 서류 대행 및 운반만 담당하는 기관에서 방사선발생장치를 구입하는 경우라면, 서류를 대행하는 기관의 명칭과 방사선발생장치의 판매허가를 받아 실제로 설치/시운전을 수행하는 기관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 판매기관 : 가나다 물산(납품서류 및 운반 업무만 수행)
 - 허가기관 : 방사선판매 주식회사(설치 및 시운전 업무 수행)

⑫ 전화번호

- 방사선발생장치 구입(예정)처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추가하거나, 교체시에만 작성한다.
- 방사선발생장치가 원자력안전법 제53조, 원자력안전법 제60조, 원자력안전법 제94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3조,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에 적합하게 공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미승인 취급자가 방사선발생장치를 공급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을 요구하는 항목이다.
- 방사선발생장치 판매기관 또는 양도기관의 담당자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⑬ 신고인

- 신고인은 대표자가 신고인이 되는 것이므로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직인 또는 관인을 날인한다.

2 변경전후 대비표

필수서류 ②

변경전후 대비표

- ① 변경전 내용은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 ② 변경되었거나 변경 예정인 내용은 변경후 항목에 작성한다.
- ③ 변경사유에는 변경된 내용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작성예시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을 보고 변경전후 대비표를 작성하는 방법 보기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이동사용)변경신고 변경전후 대비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①신고번호			
②상호			
③소재지			
④대표자			
⑤사용목적			
⑥지역 종류 및 수량			
⑦사용장소별 RG 종류 및 수량			
⑧기타변경 사항	사업자등록번호 본사 주소 등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

발급번호 : [별지 제6호서식]
제 22-1234-00 호

발급처 : (주)방사선발생장치사용신고기관
주소 : (주)방사선발생장치사용 신고기관 도로명 주소
대표자 : 방사선
생년월일 : 1900. 12. 31

방사선발생장치의 종류, 대수 및 성능 :
상세내역 별첨

사용목적 : 상세내역 별첨
사용장소 : 상세내역 별첨

발급번호 : [별지]
허가증번호 : 22-1234-00 호

방사선발생장치 상세내역
((주)방사선발생장치사용신고기관)

1. 방사선발생장치 종류, 대수, 성능

종류	대수	성능
엑스선발생장치(성공)	50 kV 1 mA X 2	
엑스선발생장치(성공)	50 kV 0.3 mA X 1	
엑스선발생장치(성공)	50 kV 0.8 mA X 1	
엑스선발생장치(성공)	90 kV 0.11 mA X 1	
엑스선발생장치(성공)	100 kV 0.25 mA X 6	
엑스선발생장치(성공)	120 kV 0.2 mA X 1	
엑스선발생장치(성공)	160 kV 1 mA X 1	

2. 사용장소별 방사선발생장치 종류, 대수, 성능

사용장소	종류	대수	성능	대수
1층 사용장소	엑스선발생장치	성공	100 kV 1 mA	1
	엑스선발생장치	성공	50 kV 0.8 mA	1
2층 사용장소	엑스선발생장치	성공	50 kV 1 mA	1
	엑스선발생장치	성공	50 kV 0.11 mA	1
	엑스선발생장치	성공	100 kV 0.25 mA	4
3층 사용장소	엑스선발생장치	성공	100 kV 0.25 mA	2
	엑스선발생장치	성공	120 kV 0.2 mA	1
4층 사용장소	엑스선발생장치	성공	50 kV 0.3 mA	1
5층 사용장소	엑스선발생장치	성공	50 kV 1 mA	1

3. 사용목적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4. 사용장소
1층 1층 사용장소, 2층 2층 사용장소, 3층 3층 사용장소, 4층 4층 사용장소, 5층 5층 사용장소

상세방법

변경전후 대비표 항목별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항목은 제시된 양식의 번호와 일치한다.

① 신고번호

-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의 좌측 최상단에 신고번호가 있다. 신고번호는 “제22-0000-00호”의 규칙으로 부여되고 있으며, 여기서 “22”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를 의미하고, 중간에 “0000”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신고확인증의 일련번호이며, 마지막의 “00”는 해당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가 갱신된 번호를 의미한다.
- 즉, “제22-1234-13호”라면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이고, 해당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이 국내에서 1,234번째로 발행된 것을 의미하고, 13번의 방사선발생장치 사용변경신고 또는 경미한 사항 변경 신고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 변경전후 대비표 작성을 위해서 최신의 유효한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변경전 항목에는 최신의 유효한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 좌측상단의 신고번호를 기재한다.
- 변경후 항목은 기재하지 않고, 변경사유도 기재하지 않는다.

작성 예)

변경전후 대비표			
구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① 신고번호	제22-0000-00호	-	

② 상호

- 변경전 항목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에 등재되어 있는 상호 명을 기재한다.
- 변경후 항목에는
 - 변경된 상호명을 기재한다.
 - 변경된 상호는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상호” 및 “과세대상 사업자과세단위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에 등재되어 상호명을 다음 예시와 같이 조합하여 작성한다.

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현장주재검사팀
 ↑ ↑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과세대상 사업자과세단위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의 상호

- 상호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좌동”으로 기재한다.
 - 변경사유에는 변경사항에 법인 분할, 사업영역 분할, 기업이미지 제고, 상호 변경 등 해당하는 사유를 기재한다.
- 작성 예)

변경전후 대비표			
구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② 상호	신고확인증에 등재된 상호	변경된 상호 (KINS-현장주재검사팀)	현장조직 개편

③ 소재지

- 변경전 항목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에 등재되어 있는 소재지 주소를 기재한다.
- 변경후 항목에는
 - 이전된 사업소 소재지 주소를 기재한다.
 - 사업소 이전이 없는 경우에는 “좌동”으로 기재한다.
- 소재지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사유란에는 사업소 이전으로 기재한다.

작성 예)

변경전후 대비표			
구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③ 소재지	신고확인증에 등재된 주소	이전할 사업소 소재지 주소	사업소 이전

④ 대표자

- 변경전 항목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에 등재되어 있는 대표자 성명을 기재한다.
- 변경후 항목에는
 - 변경된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 대표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좌동”으로 기재한다.
- 대표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사유란에는 대표자 변경으로 기재한다.

작성 예)

변경전후 대비표			
구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④ 대표자	신고확인증에 등재된 대표자 성명	변경된 대표자 성명	대표자 변경

⑤ 사용목적

- 변경전 항목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에 등재되어 있는 사용목적을 기재한다.
- 변경후 항목에는
 - 방사선발생장치 추가로 인하여 변경 또는 추가된 사용목적을 기재한다.
 - 사용목적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좌동”으로 기재한다.
- 사용목적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사유란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목적 추가 또는 변경으로 기재한다.

작성 예)

변경전후 대비표			
구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⑤ 사용목적	신고확인증에 등재된 사용목적	변경되거나 추가된 경우 사 용목적 추가	추가된 사유를 기재

⑥ RI의 종류 및 수량

- 변경전 항목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에 등재되어 있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종류 및 수량을 기재한다.
- 변경후 항목에는
 - 추가, 감량, 변경되는 방사선발생장치를 기재한다.
 - 방사선발생장치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좌동”으로 기재한다.
- 방사선발생장치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사유란에는 신규구입, 타기관 양수, 타기관 양도, 자체폐기, 해외 수출 또는 반출 등의 사유를 기재한다.

작성 예)

변경전후 대비표			
구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⑥ RG의 종류 및 수량	[엑스선발생장치] 160 kV 5 mA × 5 120 kV 3 mA × 5 90 kV 0.2 mA × 1 45 kV 0.5 mA × 2 -	[엑스선발생장치] 160 kV 5 mA × 5 120 kV 3 mA × 8 - 45 kV 0.5 mA × 1 100 kV 0.2 mA × 1	변경 없음 신규구입 타기관 양도 자체폐기 ○○○에서 양수

⑦ 사용장소별 RG 종류 및 수량

- 변경전 항목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에 등재되어 있는 사용장소별 방사선발생장치의 종류 및 수량을 기재한다.
- 변경후 항목에는
 - 사용장소별로 추가, 감량, 변경되는 방사선발생장치를 기재한다.
 - 방사선발생장치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좌동”으로 기재한다.
- 방사선발생장치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사유란에는 신규구입, 타기관 양수, 타기관 양도, 자체폐기, 해외 수출 또는 반출 등의 사유를 기재한다.

작성 예)

변경전후 대비표			
구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⑦ 사용장소 별 RG의 종류 및 수량	1층 품질관리실 160 kV 5 mA × 3 120 kV 3 mA × 3	1층 품질관리실 160 kV 5 mA × 5 120 kV 3 mA × 3	2층 분석실로 이전 160 kV 5 mA × 2
	2층 분석실 160 kV 5 mA × 2 120 kV 3 mA × 2	2층 분석실 160 kV 5 mA × 0 120 kV 3 mA × 3	1층 품질관리실로 이전 160 kV 5 mA × 2 ○○○에서 양수
	사업소 내(보관장소 : 3층 사 무실내 금고) 45 kV 0.5 mA × 2	사업소 내(보관장소 : 3층 사 무실내 금고) 45 kV 0.5 mA × 1	타 기관 양도
	-	3층 연구실 120 kV 3 mA × 3	신규구입

⑧ 기타변경사항

- 기타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의 변경사항을 기재한다.

작성 예)

변경전후 대비표			
구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⑧ 기타변경사 항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본사소재지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1 [본사소재지 주소]	법인사업자로 변경 본사 소재지 변경

3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 원본(최신본)

필수서류 ③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 원본(최신본)

-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확인증 최신본을 첨부한다.
- 원본은 그림과 같이 좌측 상단에 발급 번호가 있어야 하고, 하단에 위조방지 표시가 되어 있는 신고확인증이 원본이다.
- 사본은 그림과 같이 중앙에 워터마크로 “사본” 표시가 되어있다.
- 사본이 발급되는 경우는, 최초 사용신고로 인하여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신고확인증을 처음 발급받았을 때 사본이 발급된다.
- 최초 사용신고시 사본을 발급하는 이유는 지방세법에 따라 허가 신고를 승인하는 관청은 원본을 발급하지 못하게 하고 지방세법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였음을 확인하고 원본을 발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따라서, 최초로 사본을 발급받았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시, 군, 구청에 지방세법에 따른 제4종 등록면허세(원자력안전법 제53조에 따른 방사선발생장치 사용·판매)를 납부하고,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사본을 FAX 등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에 제출하신 후 방사선안전과 사용신고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원본을 수령할 수 있다.
- 전자민원 시스템으로 사용신고를 신청한 기관은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을 전자민원 시스템에 등록하시고 방사선안전과 사용신고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원본을 출력하실 수 있게 된다.
- 그리고, 변경허가,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등으로 인하여 허가증이 갱신되는 경우 전자민원 시스템에서 발급받을 때에는, 원본이 1회밖에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본을 출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중앙에 워터마크가 있는 사본이 발행된다. 이 경우에는 전자민원 시스템에서 사본이 아닌 원본을 출력하면 된다.
- 방사선발생장치사용 신고확인증 원본을 분실하신 경우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 원본을 대신하여 다음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1)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
- 2) 재발급 사유서
- 3)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 원본(최신본)의 위조방지 표시가 되어 있는 모습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 원본(최신본)의 워터마크로 "사본" 표시가 되어 있는 모습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 원본(최신본)의 워터마크로 "사본" 표시가 되어 있는 모습

〈신고확인증 분실시 대체 서류 양식〉

4 대표자 인적사항

선택서류 ①

대표자 인적사항 : 원자력안전법 제14조 관련

◎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하는 선택서류이다.

※ 기존 대표자에 대한 정보는 작성할 필요가 없다.

- 원자력안전법 제14조에 따라 대표자 결격사유를 확인하여 사업주체로서 적합한 대표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항목이다.
- 작성항목은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등록기준지(본적지) 주소를 기재한다.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를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기준지(본적지)주소는 지번 주소까지 전체를 기재해야 한다.
- 대표자 인적사항은 사용신고서에 등재된 대표자 모두에 대하여 제출해야 한다.

대표자 인적사항 (원자력안전법 제14조 관련)	
내국인 대표자	○ 성명 : 홍대표 ○ 주민등록번호 : 190301-1010101 ○ 등록기준지(본적지) 주소 :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119번지
내국인 대표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본적지) 주소 :
외국인 대표자	○ 성명 : 미국대표 ○ 외국인등록번호 : 190301-5050505 ○ 국내거소지 주소 :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119번지
외국인대표자	○ 성명 : ○ 여권번호 : ○ 국내거소지 주소 :
외국국적 한국인	○ 성명 : 미한국대표 ○ 외국인등록번호 : 190301-5050505 ○ 국내거소지 주소 :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119번지

- 외국인 대표자 : 3가지 서류중 1가지 서류로 대체
 - ① 국내 거주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 ② 외국 국적의 한국인 :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 ③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외국인 : 여권사본 + 자국내에서 범죄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 (1) 아포스티유 또는
 - (2) 해당국가 정부에서 발행한 자국내에서 범죄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 〈외국인 대표자인 경우 제출 서류〉

구분	국내거주 외국인	외국국적 한국인	국내 비거주 외국인
제출서류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여권사본 + • 자국내에서 범죄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 국무총리,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표자를 임명) 대표자 : 인적사항 제출 불필요
- 대표자에 대한 결격사유에 대한 검증이 완료된 대표자로서 대표자 인적사항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5 방사선발생장치 명세서

선택서류 ②

방사선발생장치 명세서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제1호 관련

- ◎ 방사선발생장치가 추가되는 경우에만 제출하는 선택서류이다.
 ※ 사용장소 이전, 사업소 이전 등 방사선발생장치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는다.
- ◎ 도입하는 방사선발생장치의 대수가 여러 대인 경우,
 ① 방사선발생장치 모델별로 방사선발생장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② 하나의 방사선발생장치 명세서에 모두 작성할 수 있음
 - 하나의 방사선발생장치 명세서에 모두 작성할 때 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종류와 구조기준, 튜브타입, 성능, 설계승인번호 등이 구별되게 작성하여야 함

작성예시

설계승인서를 보고 방사선발생장치 명세서를 작성하는 항목 보기

방사선발생장치 명세서 (첨부 1)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제1호 관련)	
① 방사선발생장치의 종류	방사선기기설계승인서의 방사선기기의 종류항목에 종류를 그대로 기재하고, 상세내역의 튜브 타입을 기술
② 방사선발생장치의 성능/수량	방사선기기설계승인서의 상세내역에 표기된 성능을 기술하고 수량은 X 대수로 표기
③ 방사선발생장치 모델번호	방사선기기설계승인서의 상세내역의 모델함에 있는 모델명을 그대로 기술
④ 고유번호	방사선발생장치의 시리얼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기입하고, 모르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남겨둠
⑤ 설계승인번호	방사선발생장치 설계승인번호는 방사선발생장치 설계승인서의 승인번호를 기술
⑥ 제조회사의 명칭 (제조국)	설계승인서에 표기된 제작사의 명칭을 기술하고, 제조국가도 표기
⑦ 공급사 (전화번호)	구입하는 경우 판매기관명 및 전화번호 양수받는 경우 양도기관명 및 전화번호
⑧ 사용목적	신고기관에서 사용하는 목적을 기술
⑨ 사용방법	사용시 인가되는 최대 전압과 전류를 기술하고, 시작, 운전, 종료 방법을 기술
⑩ 사용장소	방사선 발생장치가 설치되는 건물명, 층수, 호실 형태로 기술하고 신고한 기관에서 통상적으로 활용되는 장소의 명칭을 기재함
⑪ 표면방사선량률	구입하고자하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카탈로그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면방사선량률을 기술
⑫ 기타 사항 사용 시 주의사항 등	- 방사선발생장치를 취급할 때 주의사항을 기술한다. - 표면을 방사선발생장치로서 배열번호로 통치시키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기술한다. - 설계승인서를 받은 기관과 판매사가 서로 다를 경우, 방사선발생장치를 정당한 경로로 획득하였는지 확인 사항을 기술한다.

승인번호 : 190217045001
 [발자 제70호서서]
 제 344-24 호

방사선기기설계승인서

상 호 : ()
 주 소 : ()
 대 표 자 : ()

방사선기기의 종류 :
 종 류 : 제비인형 핵소선발생장치
 모 델 : 상세내역 열람
 설 비 : 상세내역 열람
 제작사 : 자비스(주)
 주 문 : 신고대상장비
 승인번호 : NSSC1.11190004.24
 사용목적 : 제품개발용
 승인조건 : 상세내역 열람

승인일자 : 2004.10.06
 기기감사 : 합격

위와 같이 원자력안전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자] 제 344-24 호 설계승인번호 : NSSC1.11190004.24

설계승인서 상세내역

■ 모델 및 성능

모델명	특성	튜브타입	비고
Factor-2000	10 KV, 1.25 mA	상급	

상세방법

방사선발생장치 명세서는 첨부 1의 표준양식을 제공하고 항목별 작성항목을 설명한 것이다.

- 도입하여 사용하고자하는 방사선발생장치가 원자력안전법 제60조 및 제61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6조에 따라 신고대상 장비로서 안전성이 입증된 방사선발생장치인지를 확인하고 검증하기 위하여 작성되어야 하는 항목이다.
- 또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제1호에서 요구하고 있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종류 및 최대에너지, 표면방사선량률, 사용목적, 사용방법, 방사선발생장치의 명칭, 모델번호, 고유번호, 제조사의 명칭이 빠짐없이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을 요구하는 항목이다.

① 방사선발생장치의 종류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조(방사선발생장치)에 따라 원자력안전법의 규제적용 대상 방사선발생장치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을 요구하는 항목이다.
- 또한,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제15조의 구조기준이 신고대상 방사선발생장치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을 요구하는 항목이다.
- 방사선발생장치의 종류는 방사선기기설계승인서의 방사선기기의 종류에 있는 첫 번째 항목에 표기된 내용을 기재한다.
- 또한,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제15조의 구조기준 「완전방호형», 「캐비닛형», 「무인격리형», 「휴대개방형」을 기재한다.
- 아울러, 튜브가 여러개 장착된 방사선발생장치가 존재하므로 튜브타입을 병행하여 기재한다.
- 방사선발생장치의 종류를 기술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다.

방사선발생장치 명세서	
① 방사선발생장치의 종류	캐비닛형 엑스선발생장치, 듀얼타입 또는 휴대개방형 엑스선발생장치, 싱글 또는 무인격리형 엑스선발생장치, 듀얼타입 또는 캐비닛형 가속이온주입기, 싱글 등

② 방사선발생장치의 성능 및 수량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된 내용이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 서식에 따라 방사선발생장치의 종류 · 대수 성능으로 표기하기 위하여 작성을 요구하는 항목이다.
- 방사선발생장치의 성능은 방사선기기설계승인서의 방사선기기의 종류항목의 세부항목중 성능에 표기되어 있는 성능을 기술하고, 도입하고자 하는 방사선발생장치의 대수를 기술한다.
- 방사선발생장치의 성능 및 수량을 기술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다.

방사선발생장치 명세서	
② 방사선발생장치의 성능/수량	160 kV, 0.5 mA × 2, 100 kV, 0.2 mA × 1

③ 모델번호

- 도입하고자하는 방사선발생장치가 신고대상 방사선발생장치로서의 적합하게 설계승인된 방사선발생장치인지를 확인하고 검증하기 위하여 작성을 요구하는 항목이다.
- 도입하고자 하는 방사선발생장치의 모델은 해당 방사선발생장치의 카탈로그를 통하여 확인하고 해당 모델이 방사선기기 설계승인서에 등재되어 있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인지를 확인한다.
- 방사선발생장치의 모델번호는 방사선기기설계승인서의 방사선기기의 종류항목의 세부항목중 모델란에 표기되어 있는 모델을 기술한다.
- ※설계승인서에 모델이 시리즈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모델번호는 시리즈로 작성하면 안되고, 시리즈에 포함되어 있는 세부 모델명을 기술하여야 한다.
- 방사선발생장치의 모델을 기술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다.

방사선발생장치 명세서	
③ 방사선발생장치 모델번호	X-RAY 3000D, X-RAY 3000AD

④ 고유번호

- 방사선발생장치 고유번호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시리얼 번호를 기재한다.
※최초에 방사선발생장치를 도입하는 기관으로서 시리얼 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둔다.
- 방사선발생장치의 고유번호를 기술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다.

방사선발생장치 명세서	
④ 고유번호	공란 또는 X-3000D-20190001 등

⑤ 설계승인번호

- 설계승인번호는 도입하고자 하는 방사선발생장치가 신고대상 방사선발생장치로 설계승인 및 제작검사가 완료되어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작성을 요구하는 항목이다.
- 설계승인 번호는 도입하고자 하는 방사선발생장치 모델별로 작성한다. 모델과 성능이 다른 여러 대의 방사선발생장치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모델의 설계승인번호를 기재한다.
- 방사선발생장치 설계승인번호는 방사선기기설계승인서 최신본의 승인번호를 기술한다.
※설계승인번호는 도입되는 방사선발생장치에 부착되어 있는 설계승인번호와 동일한 설계승인번호를 기술하여야 한다.
- 방사선발생장치의 설계승인번호를 기술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다.

방사선발생장치 명세서	
⑤ 설계승인번호	NSSC1.321RG001.05 등

⑥ 제조회사의 명칭

- 제조회사의 명칭은 도입하고자 하는 방사선발생장치가 설계승인된 방사선발생장치와 동일한 성능으로 제작되고 판매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을 요구하는 항목이다.
- 방사선발생장치 제조회사의 명칭은 방사선기기설계승인서의 방사선기기의 종류항목의 세부항목중 제작사의 명칭을 기술한다.
- 방사선발생장치의 제조회사의 명칭을 기술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다.

방사선발생장치 명세서	
⑥ 제조회사의 명칭 (제조국)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

⑦ 공급사

- 방사선발생장치가 원자력안전법 제53조, 원자력안전법 제94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3조,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에 적합하게 공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미승인 취급자가 방사선발생장치를 공급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을 요구하는 항목이다.
-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서의 “방사선발생장치 구입(예정)처”란에 있는 구입처와 동일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 방사선발생장치를 구입하는 경우, 판매기관의 판매허가증에 등록되어 있는 상호를 기술한다.
- 다른 기관에서 방사선발생장치를 양도받는 경우, 해당기관의 신고확인증(또는 허가증)에 등록되어 있는 상호를 기술한다.
- 판매기관과, 공급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납품을 하는 기관과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하고 시운전을 수행하는 기관을 같이 표기한다.

- 방사선발생장치의 공급사를 기술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다.

방사선발생장치 명세서	
⑦ 공급사 (전화번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판매기관) 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현장주재검사팀(양도기관) 가나나 물산(운반 및 납품), 방사선발생장치 판매 주식회사(설치 및 시운전)

⑧ 사용목적

-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목적은 방사선발생장치의 취급이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적합하게 취급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항목이다.
- 사용목적은 방사선발생장치의 설계승인서에 표준사용목적이 제시되어 있지만, 신청기관에서 사용하고자하는 실제 목적을 기술한다.
예) 설계승인서의 사용목적이 “제품결함검사”인 경우라도 사용목적을 “회로기판 불량검출 및 결함검사”, “제품내 이물질 검사”, “용접결함검사” 등이 될 수 있다.
-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목적을 기술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다.

방사선발생장치 명세서	
⑧ 사용목적	회로기판 불량검출 및 결함검사 또는 제품내 이물질 검사 또는 용접 결함 검사 등

⑨ 사용방법

-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목적은 방사선발생장치의 취급이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적합하게 취급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항목이다.
- 사용방법은 방사선발생장치를 시작, 운전, 종료 방법을 간단한 절차를 기술하고, 통상적으로 인가되는 최대 전압과 전류를 기술한다.
-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방법을 기술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다.

방사선발생장치 명세서	
⑨ 사용방법	키 스위치와 비밀번호로 방사선발생장치를 가동하여 사용 가동전압 160 kV 0.1 mA를 인가하여 일일 5시간 사용

⑩ 사용장소

-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목적은 방사선발생장치의 취급이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 기준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항목이다.
-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장소는 방사선발생장치가 설치되는 건물명칭, 층수, 설치공간(명칭, 호실)을 기술한다.
사용장소는 신청하는 기관에서 통상적으로 호칭하는 명칭을 기술하여야 향후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는다.
※캐비닛형 방사선발생장치의 경우 제품 생산공정명 또는 생산라인으로 표기하는 것보다 물리적으로 구획되어 있는 공간을 사용장소로 기술하는 것이 향후 관리에 용이성이 있다.
예) 연구동 2층 포장실, 공장동 1층 생산실 등
- 휴대용 방사선발생장치로서 이동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장소는 사업소 내 또는 사업소 내외로 기술하고 보관장소를 방사선발생장치가 보관되는 건물명칭, 층수, 보관공간을 표기한다.

-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방법을 기술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다.

방사선발생장치 명세서	
⑪ 사용장소	사업소 내 (보관장소 : 사무동 기기보관실 캐비닛 내), 사업소 외 (보관장소 : A동 1층 장비보관실 금고내) 연구동 2층 정밀측정실, 사업소 내/외 (보관장소 : 품질보증실 캐비닛내)

⑪ 표면방사선량률

- 도입하여 사용하고자하는 방사선발생장치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6조에 따라 신고대상 장비로서 안전성이 입증된 방사선발생장치인지를 확인하고 검증하기 위하여 작성을 요구하는 항목이다.
- 표면방사선량률의 기술은 사용하고자하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카탈로그 또는 설계승인 및 제작검사 시 평가한 선량 등 통상적인 표면방사선량률을 기술하며, 긴 사용시간등 작업자의 피폭선량이 높다고 판단되는 특이사항의 경우 연간피폭선량을 계산하여 자세히 기술한다.
-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방법을 기술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다.

방사선발생장치 명세서	
⑪ 표면방사선량률	표면 10 cm에서 1 μ Sv/h

⑫ 기타 사항

- 방사선발생장치를 취급할 때 주의사항을 기술한다.
- 휴대용 방사선발생장치로서 비밀번호로 동작시키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기술한다.
- 설계승인을 받은 기관과 판매사가 서로 다를 경우, 방사선발생장치를 정당한 경로로 획득하였는지 확인 사항을 기술한다.

방사선발생장치 명세서	
⑫ 기타 사항 사용 시 주의사항 등	○ 방사선발생장치를 취급할 때 주의사항 ○ 비밀번호로 동작하는 장비는 그 특성을 기술 ○ 설계승인을 받은 기관과 판매사가 서로 다를 경우, 그 이유와 경위를 기술

방사선기기설계승인서

방사선기기설계승인서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제1호 관련

- ◎ 방사선발생장치가 추가되는 경우에만 제출하는 선택서류이다.
- ※ 사용장소 이전, 사업소 이전 등 방사선발생장치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는다.
 - ※ 튜브타입이 정정된 경우 예전 설계승인서와 현재 설계승인서를 제출한다.
- ◎ 방사선발생장치가 추가되는 경우에만 추가되는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설계승인서를 스캔하여 첨부 한다.
- ◎ 도입하는 방사선발생장치의 대수가 여러 대인 경우,
- ① 방사선발생장치 명세서에 제시한 방사선발생장치 모델 및 설계승인번호별로 첨부 한다.
- ◎ 설계승인 도입 이전의 장비는 설계승인서가 없어도 된다.
- ※ 설계승인서가 없을 경우, 카탈로그를 제출한다.(설계승인 제출시, 카탈로그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별첨] [1 / 2]
문서번호 : 344-24 호 설계승인번호 :

((주)자비스)

성능	류브타입	비고
80 kV, 1.25 mA	성급	
80 kV, 1.25 mA	성급	
120 kV, 4 mA	성급	
80 kV, 1.25 mA	성급	
80 kV, 1.25 mA	성급	
80 kV, 1.25 mA	성급	
80 kV, 1.25 mA	성급	
90 kV, 1.25 mA	성급	
90 kV, 1.25 mA	성급	
90 kV, 1.25 mA	성급	
90 kV, 1.25 mA	성급	
90 kV, 1.25 mA	성급	
90 kV, 1.25 mA	성급	
90 kV, 1.25 mA	성급	
90 kV, 1.25 mA	성급	
120 kV, 7.5 mA	성급	
120 kV, 7.5 mA	성급	
120 kV, 7.5 mA	성급	

선택서류 ④

◎ 방사선발생장치가 감량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제출서류는

- ◎ 감량하는 방사선발생장치의 대수가 다수인 경우, 방사선발생장치 대수별로 관련 서류를 첨부한다.



〈양도양수 신고서 사본〉

〈수출승인서 사본〉

8 사용시설등 및 주변환경에 관한 설명서

선택서류 ⑤

사용시설등 및 주변환경 현황에 관한 설명서 :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제3호 관련

◎ 사업소 소재지가 이전된 경우에만 제출한다.

※ 사용장소 이전, 방사선발생장치 추가 등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는다.

사용시설 및 주변환경 현황에 관한 설명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제3호 관련)

1. 사업소(사용시설) 주변 환경

가. 지리 환경

- 1) 사용시설 주변 부지의 특성(농경지, 공단, 주거지 등 조성 여부)
 - 여기부터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 2) 사용시설 인근에 설치된 대중 이용시설(학교, 시장 등) 주유소 등 위험물 취급시설 등의 위치정보 등
 - 여기부터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 3) 사용시설 인근에 조성된 수계(강, 하천 등)에 대한 설명
 - 여기부터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회 환경

- 1) 사업소 주변의 개략적인 인구밀도 및 주민 분포, 유동 인구 유동 특성
 - 여기부터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 2) 사업소 주변의 교통망 및 소방 도로 등
 - 여기부터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 3) 관할 소방서의 위치 및 사용시설로부터의 거리, 연락처 등
 - 여기부터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 4) 관할 경찰서의 위치 및 사용시설로부터의 거리, 연락처 등
 - 여기부터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다. 사용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지도 (별첨 1)

[별첨 1] 사용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지도



9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장소에 대한 설명서

선택서류 ⑥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장소에 대한 설명서 :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제3호 관련

- ◎ 방사선발생장치 설치장소(사용장소) 변경(이전, 또는 추가)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 기존 사용장소에 사용방사선발생장치 추가되는 경우에는 별첨의 설치 도면만 제출한다.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장소에 대한 설명서

1. 사용(보관)장소 주변 특성

가. 사용(보관)장소 및 작업환경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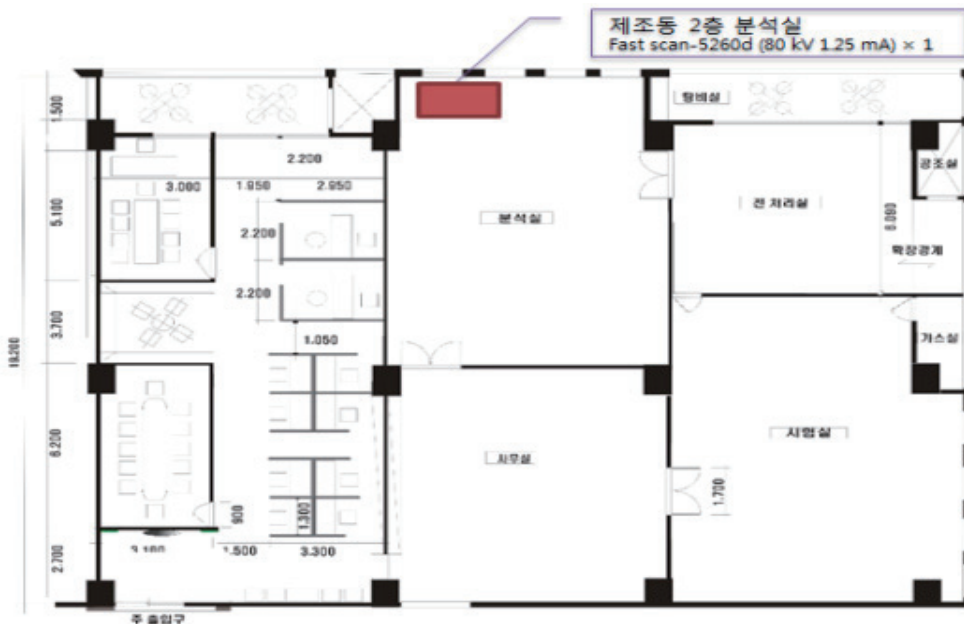
- 1) 사용장소 명칭 : 방사선발생장치 명세서에 표기된 사용장소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
- 2) 사용장소 주변에서 피폭될 수 있는 주변에 사람의 접근 가능성 및 피폭될 수 있는 인원수
- 여기부터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용(보관)장소의 특성

- 1) 화재 우려 : 건물의 주요 구조부의 재질(콘크리트, 불연성 자재 등) 및 소방시설 설치 등
- 여기부터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 2) 침수 우려 : 사용시설의 설치높이, 배수로 등
- 여기부터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 3) 지반붕괴의 우려 : 건물의 주요 구조부의 재질, 등
- 여기부터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 4) 보안관리 : 사용(보관)시설에 CCTV, 시건장치, 출입통제시스템 등의 보안설비 설치
- 여기부터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다. 사용(보관)장소의 평면도 (별첨 2)

[별첨 2] 사용장소 평면도 (사용장소 명칭, 방사선원의 모델명, 성능, 수량을 함께 기재합니다.)



[제조동 2층 평면도]

3. 기타 특기사항

(필요한 경우) 방사선안전 측면에서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10 사업자등록증 사본

선택서류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 상호변경, 대표자 변경, 사업소 소재지 이전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신고서의 상호명, 대표자명, 본점 소재지, 사업소 소재지가 일치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스캔하여 첨부한다.

11 소재지를 신고기관이 점유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선택서류 ⑧

임대차 계약서 등 소재지를 신고기관이 점유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소 소재지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추가로 제출한다.

예) 임대차계약서, 입주계약서 등 각종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건물 또는 토지 등기관 관련 서류, 건축허가서, 용도변경승인서 등 관련 지자체의 승인서 등

※ 제출하고자 하는 입증자료에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금액 등)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모두 삭제 또는 가림처리하여 제출